

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6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6년 10월 12일)

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#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추구를 위한 기구 및 직제 조정과 관련하여 구 위임사무 권한의 일부를 본청 사무로 조정하고,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구 위임사무 중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삭제함.(안 별표)
- 하수과 소관 사무중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사항, 하수도 유지관리, 소하천의 점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동 조례가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 9호에 규정된 기타 주민의 권리·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에 포함되는 입법예고 대상사무가 아닌지?	○ 기구 및 직제조정과 관련하여 구 위임사무 권한의 일부를 본청 사무로 조정하고, 하수과 일부 사무를 구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.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호
의결 년월일	2006. 10. 19 (제131회)

제출년월일 : 2006. 9. 29

제 출 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추구를 위한 기구 및 직제조정과 관련하여 구 위임사무 권한의 일부를 본청 사무로 조정하고,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도 및 소하천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구 위임사무 중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삭제함.(안 별표)
- 나. 하수과 소관 사무 중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사항, 하수도 유지관리, 소하천의 점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함.(안 별표)

##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제1호 농산지원과란중 1. 농지전용신고란을 삭제한다.

별표의 제1호 하수과에 2.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 및 3.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2.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공공하수도의 설치 나.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다. 공작물 설치허가 라. 배수설비의 설치신고	• 「하수도법」 제18조 • 「하수도법」 제18조 • 「하수도법」 제20조 • 동법 시행령 제14조 • 「하수도법」 제24조 • 동법 시행령 제14조	
3.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 나. 소하천 정비상태의 점검 다.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	•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 • 동법 시행령 제12조 • 동법 시행규칙 제10조, 제12조 • 동법 시행령 제14조 •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6조	

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기관
	라.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허가취소 등 처분 마.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 바.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자의 조치	「소하천정비법」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2조, 제27조	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총 무 과
입	담당과장	김 영 의
안	담당팀장	하 전 동
자	담 당 자	고명화(☎320-2115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 1.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 사항

현		행			개 정 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입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입 기관
농 산 지원과	1.농지전용 신고	가. 농업인 주택, 농업용 시설, 농수산물 유통· 가공시설의 부지전용	· 「농지법」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	구청장	---	<삭 제>			---
	나. 어린이놀이터, 마을 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 생활 편의시설의 부지전용	· 「농지법」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							
	2.(생 략)	다. 농수산물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·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의 부지 전용	· 「농지법」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						
		라. 농지전용 신고 사항 의 변경에 관한 사무	· 동법 제37조, 제42조			2.(현행과 같음)			

현행					개정안				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 사무명	근거법 적용	수입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입 기관
하수과	1.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		구청장	---	1.(현행과 같음) 2.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공공하수도의 설치 나.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다. 공작물 설치 허가 라.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	· 「하수도법」 제18조  · 「하수도법」 제18조  · 「하수도법」 제20조 · 동법 시행령 제14조 · 「하수도법」 제24조 · 동법 시행령 제16조	---
	<u>&lt;신설&gt;</u>				3. 소하천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	가.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	·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2조,제14조, 제15조 · 동법 시행령제12조 ·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2조		

현행					개정안				
실과 소별	위 임 사무명	단 위 사무명	근거법 적 용	수임 기관	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위사무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							<u>나.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</u> <u>다.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</u> <u>라.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허가 취소 등 처분</u> <u>마.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</u> <u>바. 소하천의 점용 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 위반 자의 조치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동법 시행령 제14조</u></li> <li>· 「<u>소하천정비법</u>」 제16조</li> <li>· 「<u>소하천정비법</u>」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</li> <li>· 「<u>소하천정비법</u>」 제22조</li> <li>· 「<u>소하천정비법</u>」 제22조, 제27조</li> </ul>	